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에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감축하고,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정당 조달업체 제재 등 체계적인 계약심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무관리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4.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군사협정 및 국제 계약”을 “군사협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내외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심의회 운영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 기획 및 조정·통제
2. 방위산업 수출 업무에 관한 법제 정비
3.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군 지원 업무 조정·통제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물자 또는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 검토
 8. 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부 정책 지원
- ④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⑥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1 중 총계 “679”를 “6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71”을 “66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49”를 “646”으로 한다.

별표 2 중 3급 또는 4급 이하 “72”를 “71”로, 전문경력관 “1”을 “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8조제7항,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4항, 제29조의3제4항 관련)

1. 국방개혁실(존속기한: 2023년 7월 25일)

총계	8
일반직 계	8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7

2.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4년 1월 30일)

총계	15
일반직 계	15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14

3. 군인권개선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1

4. 방위산업수출기획과(존속기한: 2025년 4월 30일)

총계	7
일반직 계	7
3급 또는 4급 이하	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법무관리관) ① (생 략)	제8조(법무관리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②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국방정책, 외국과의 <u>군사협정</u> <u>및 국제 계약에 관한 법적 검</u> <u>토 및 지원</u>	9. ----- <u>군사협정</u> ----- -----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 <u>국내외 계약에 관한 법적 검</u> <u>토 및 관련 심의회 운영</u>
<u><신 설></u>	<u>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u> ① <u>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u>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u> <u>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u> <u>호에 따라 2025년 4월 30일까지</u> <u>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u> <u>업수출기획과를 둔다.</u> ② <u>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u> <u>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u> <u>급으로 보한다.</u> ③ <u>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u> <u>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의</u>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
기획 및 조정·통제

2. 방위산업 수출 업무에 관한
법제 정비

3.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군 지
원 업무 조정·통제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수출 관련 국제협
력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물자 또는 군용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 검
토

8. 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부 정
책 지원

④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
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
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
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
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
리 협의해야 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9</u>	<u>676</u>	-3
•	•	•	
•	•	•	
일반직 계	<u>671</u>	<u>668</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49</u>	<u>646</u>	-3
•	•	•	

[별표 2]

국방부 소속기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2</u>	<u>71</u>	-1
전문경력관	<u>1</u>	<u>2</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3